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3월 13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박춘용

#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세계경제 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건설사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분 동반부실 우려가 있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한을 1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기간을 연장함(안 제15조제4항).
- 나.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·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(안 제 15조제5항).

## 3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·등록세 감면제도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